

#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: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- 담당부서 : 교무실, 행정실
- 책임관 : 교감 (연락처) 063-544-3155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행정실장 (연락처) 063-544-3154
- 운영담당자 : 캡스 (연락처) 이영석 팀장 010-2923-9860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(주간) 교감 (연락처) 063-544-3155  
  행정실장 (연락처) 063-544-3154  
  (야간) 야간당직자 (연락처) 063-544-3154
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	위 치	카메라 대수	화소수	촬영범위
지평선고 등학교	우정원 1층	5	210만화소	출입구, 복도
	우정원 2층	4	210만화소	출입구, 복도
	지혜의 뜰	2	210만화소	양쪽 출입구
	정문	1	210만화소	정문출입구
	후문	1	210만화소	후문출입구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- 안내판 규격 : 40\*30cm
- 부착장소 : 학교 출입구, 교사 출입구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-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 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

**상정보의 보관 장소**

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
나.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180일

다.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

-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순차적(처음자료)으로 삭제하여야 한다. (자동삭제)
-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
라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학교 당직실 안 CCTV 통제실, 교무실 영상정보처리실

**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현황**
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.

가. 영상정보 열람 및 재생장소 : 당직실, 교무실

나. 출입통제

- 출입제한 구역 지정 : 영상정보 열람 및 재생장소
-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-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교장, 교감 및 취업자로 제한한다.
-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.

**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**

○ 화상정보 접근 권한 부여 모니터링 요원 현황 ○

학 기 중		방 학 기 간		유의사항
주 간	야 간	주 간	야 간	
교감 행정실장	야간 당직자	1. 교감, 행정실장 2. 근무조장1인 (해당 근무일에만 권한 유효)	야간 당직자	모니터링 요원은 신분검증을 거친 학교근무자를 지정, 활용하되, 이들에게 안행부공공기관CCTV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법적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시킨다.

**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**

설치목적외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영상정보를 그 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다음과 같다.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

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2.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)
3.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)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,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, 이용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, 개인정보의 안전성

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